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원경찰의 직급체계 신설 및 승진제도 도입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직급체계 신설 및 근속승진 제도 도입	2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변경	9
※ 참고자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안번호 제2114844호)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08. 08.
3. 회 부 일 : 2024. 08.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직급체계를 신설하고, 직급체계 신설을 전제로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며, 청원경찰 보수 역시 신설된 청원경찰 직급체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려는 것임.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직급체계 신설 및 근속승진제도 도입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급 및 승진)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원감 2. 청원위 3. 청원사 4. 청원장 5. 청원경 ② 청원주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각각 승진임용한다. 다만, 청원주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청원경찰 등을 특별히 상위

현행	개정안
	<u>직급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u> <u>1. 청원경을 청원장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9년 이상 근속자</u> <u>2. 청원장을 청원사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u> <u>3. 청원사를 청원위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7년 이상 근속자</u> <u>4.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u> <u>③ 청원주는 직급별·재직기간별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④ 청원주는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u> <u>⑤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승진임용의 기준·방법·절차·주기, 그 밖에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생략)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생략)	제5조의3(청원경찰의 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임, 강등-----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고,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국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이라 한다)은 재직기간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 직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 받고 있음¹⁾).

나아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경찰 배치시설 내 지휘·감독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감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함.

1)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감독자 지정 관련 규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4]

감독자 지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근 무 인 원	직급별 지정기준		
	대 장	반 장	조 장
9명까지			1명
10명 이상 29명 이하		1명	2 ~ 3명
30명 이상 40명 이하		1명	3 ~ 4명
41명 이상 60명 이하	1명	2명	6명
61명 이상 120명 이하	1명	4명	12명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청원경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개정안은 직급체계 신설을 전제로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일정한 재직기간이 도과하면 승진시키는 제도 도입 시 청원경찰의 사기진작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청원경찰의 직무가 그 종류·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다섯 가지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공무원법」상 정의된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함²⁾.

그런데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의 총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라는 청원경찰의 직무가 그 종류·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다섯 가지 수준으로 까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청원경찰 배치시설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총 1,302개인데, 근무인원이 1명인 시설이 335개로 전체 시설의 21.1%를 차지하며, 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이 1,042개로 전체 시설의 80.0%를 차지하는바, 대부분의 배치시설에서 청원경찰이 소규모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청원경찰 배치시설별 근무인원 현황>

구분	계	국가기관·지자체		국가기관·지자체 외	
계	1,581	1,302	누계	279	누계
0명	34(2.0%)	20(1.5%)	-	14(5%)	-
1명	335(21.1%)	312(23.9%)	332 (25.4%)	23(8.2%)	37 (13.2%)
2명	217(13.7%)	176(13.5%)	508 (39%)	41(14.6%)	78 (27.9%)
3명	165(10.4%)	149(11.4%)	657 (50.4%)	16(5.7%)	94 (33.6%)
4명	227(14.3%)	175(13.4%)	832 (63.9%)	52(18.6%)	146 (52.3%)
5명	63(3.9%)	45(3.4%)	877 (67.3%)	18(6.4%)	164 (58.7%)
6~10명	224(14.1%)	165(12.6%)	1,042 (80%)	59(21.1%)	223 (79.9%)
11~20명	167(10.5%)	140(10.7%)	1,182 (90.7%)	27(9.6%)	250 (89.6%)

2)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구분	계	국가기관·지자체		국가기관·지자체 외	
21~30명	68(4.3%)	59(4.5%)	1,241 (95.3%)	9(3.2%)	259 (92.8%)
31~40명	41(2.5%)	30(2.3%)	1,271 (97.6%)	11(3.9%)	270 (96.7%)
41~50명	14(0.8%)	12(0.9%)	1,283 (98.5%)	2(0.7%)	272 (97.4%)
51~60명	8(0.5%)	7(0.5%)	1,290 (99%)	1(0.3%)	273 (97.8%)
61~70명	4(0.2%)	4(0.3%)	1,294 (99.3%)	0(0%)	273 (97.8%)
71~80명	9(0.5%)	5(0.3%)	1,299 (99.7%)	4(1.4%)	277 (99.2%)
80명이상	5(0.3%)	3(0.2%)	1,302 (100%)	2(0.7%)	279 (100%)

자료: 경찰청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도 대규모 배치시설에서는 이미 대장-반장-조장 체계를 통해 근무인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직급체계 신설이 인력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4: 감독자 지정기준>

근무인원	조장	반장	대장
9명 이하	1명		
10명~29명	2~3명	1명	
30명~40명	3~4명	1명	
41명~60명	6명	2명	1명
61명~120명	12명	4명	1명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직급체계를 도입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급’체계를 「

청원경찰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및 공무원 인사체계를 고려 시 적절치 않고, 경찰과 달리 소규모 인원으로 인사이동 없이 ‘경비’라는 단일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에 경찰과 유사한 직급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에 대해 직급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혼란 야기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변경

현행	개정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u>경찰공무원의</u> 보수를 <u>감안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u>순경</u>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u>경장</u>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u>경사</u> 4. 재직기간 30년 이상: <u>경위</u> ③ (생략)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국가공무원</u> 보수에 <u>관한</u> 법령에 따른 <u>경찰공무원의</u> 보수를 <u>적용하여</u>-----. 1. 청원경: <u>순경</u> 2. 청원장: <u>경장</u> 3. 청원사: <u>경사</u> 4. 청원위: <u>경위</u> 5. 청원감: <u>경감</u>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은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 봉급을 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877,000	-	-	-
2	1,914,800	-	-	-
3	1,962,500	-	-	-
4	2,020,700	-	-	-
5	2,090,300	-	-	-
6	2,172,300	-	-	-
7	2,263,100	-	-	-
8	2,350,400	-	-	-
9	2,434,300	-	-	-
10	2,514,800	-	-	-
11	2,591,700	-	-	-
12	2,667,900	-	-	-
13	2,741,200	2,926,800	-	-
14	2,812,300	3,000,800	-	-
15	2,880,300	3,071,900	-	-
16	2,946,000	3,140,600	-	-
17	3,010,300	3,204,600	-	-

18	3,070,200	3,266,700	-	-
19	3,129,000	3,326,400	3,718,800	-
20	3,185,000	3,383,300	3,779,900	-
21	3,237,800	3,437,500	3,838,200	-
22	3,288,700	3,489,700	3,893,100	-
23	3,337,200	3,539,300	3,946,500	-
24	3,383,700	3,587,200	3,996,900	4,274,900
25	3,427,800	3,632,700	4,044,800	4,325,900
26	3,468,100	3,676,700	4,090,700	4,372,600
27	3,502,500	3,713,400	4,129,400	4,412,500
28	3,535,700	3,748,800	4,165,600	4,451,100
29	3,567,800	3,782,200	4,200,500	4,487,400
30	3,599,100	3,814,700	4,234,000	4,521,600
31	3,629,500	3,846,100	4,265,400	4,554,500

그런데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청원경찰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직접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①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을 결정하고 ② 해당 청원경찰 직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찰공무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음.

<재직기간별 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찰공무원 직급>

재직기간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청원경찰 직급
9년 미만	순경	순경	청원경
9년 이상 15년 미만		경장	청원장
15년 이상 17년 미만	경장	경사	청원사
17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24년 미만	경사	경위	청원위
24년 이상 30년 미만		경감	청원감
30년 이상	경위		

청원경찰 직급체계 신설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직기간별 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찰공무원의 직급이 상향되어 총 보수지급액이 증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정안 중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직급 체계 신설을 전제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인사혁신처는 보수규정 개정은 직급체계 신설을 전제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개정안의 문구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은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 이를 ‘감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청원경찰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경찰과 채용절차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경력에 따른 직무의 변동이 적어 경찰과 같은 직급 구별이 곤란하며, 현재도 보수를 경찰에 준하여 지급 중인 가운데 대장·반장·조장에 게 각 직책에 따른 감독자 직책수당도 지급중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불수용 의견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과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간 급여격차를 심화시킬 우려 역시 존재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재정부담 관련하여, 과거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³⁾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체계가 신설되고 보수체계가 변경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보수 및 기관부담금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총 710억 2,5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별승진제도가 적용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345

3) 청원경찰법(의안번호 제2114844호)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